

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0월 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10. 13) 상정
- 제10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10. 13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이 해 양)

가. 제안이유

(안건 1) 경기예술고 부지 명의 변경

- 예술고등학교 설립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부지 무상대부 요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무상대부는 가능 하지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사실상 무상대부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매수자 명의변경 (당초 부천시 → 도교육청)을 추진코자 함

(안건 2) 공유재산(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지) 매각

- 계남대로 확장공사에 편입한 토지의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로 본 토지가 부일·천일연립 재건축아파트 부지내로 편입되어 재건축조합에 재 매각하여야 하는 바
- 소유권 취득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는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재건축착공 지연으로 집단민원 발생이

예상되므로 현재 협의되지 않고 자진철거가 안되는 건물에 대하여 계고서 발부 후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를 하여야 하나,

- 철거까지는 약1~2개월이 소요되므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매각에 필요한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철거와 동시 재 건조합측에 매각 처분코자 함.

(안건 3)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

- 자유시장주변은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입점상인들이 경인국도 1개 차선을 무단 점용한 채 상품 입·출고 행위를 하는 등 상품 반출·입에 불편을 겪고 있어
 - 경인국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입점상인들이 안전한 상품 입·출고 작업을 위하여 공동작업장 설치가 필요함
- ※ 설치대상부지 : 1필지 522.4m²

(안건 4) 부천시점자도서관 건립

- 2003. 3월 제103회 임시의회에서 가결되었던 「원미구 심곡동 454-1번(구 농촌지도소)」 시각장애인(점자도서관)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로
- 2003. 7월 제105회 임시의회에 「원미구 중동 1051-8(꿈빛도서관 부지)」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신청 하였으나, ‘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민원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장소를 선정하라’는 사유로 반려되어 적정부지 재검토와 함께
- 시각장애인을 위한 『(가칭)터치미 미술관 및 소규모 어린이도서관』 복합건립에 대한 심의

(안건 5) 부천시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

- 장애인들의 재활근로를 위한 능력향상과 가정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복지시책의 전환 [수혜적복지 → 생산적복지] 이 필요하며
- 2003. 7월 제105회 임시의회에 「오정구 삼정동 203-6」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청하였으나, ‘교통이 편리하고 공해와 악취가 나지 않는 곳에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를 재검토하라’는 사유로 부결되어,
- 장애인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해가 없는 지역을 재선정하였기, 『부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』 건립에 대한 심의.

(안건 6) 역곡동 27-18번지 부지 매입(도로개설)

- 원미구 역곡동 27-18번지 부지를 매입 도로를 개설하여 막다른 인접도로를 연결시켜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통행을 원활하게하며,
-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(8면)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심의.

나. 주요골자

(안건 1) 경기에술고부지 명의 변경

1. 부지 계약 현황

- 소재지 : 원미구 중동 1031번지
- 부지면적 : 16,782m²(5,076.5평)
- 계약일자 : 1999. 12. 30(5년 분할 납부)

- 계약금액 : 9,629백만원(원금 : 7,747 이자 : 1,882)
- 기납부액 : 6,231백만원(계약금외 3년차 납부금)
- 납부잔액 : 3,398백만원(2년치 시기 미도래분)

※ 경기예술고 신축 교사 현황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운동장 면적 : 5,321㎡(1,609.6평) ▪ 건축 면적 : 2,670.1㎡(788.6평) ▪ 건축 연면적 : 9,331.86㎡(지하1층, 지상5층)
--

2. 주요 추진 사항

- '99. 3. 17 : 부천예술고 유치 기본계획수립(정책기획실, 총무과)
- '99. 7. 8 : 제71회 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결
- '99. 12. 30 : 부지 매매계약 체결(부천시 ↔ 대한주택공사)
- '00. 1. 7 : 학교설립 요청(부천시 → 경기도 교육청)
- '00. 7. 9 : 도시계획시설변경(구청 및 보건소 부지 → 예술고 부지)
- '02. 1. ~ '02. 9. : 예술고설립부지 무상대부 관련 협의
(부천시 ↔ 경기도교육청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경기도 교육청 : 예술고설립부지 무상대부 요청 ▶ 부천시 회신 : 관계법상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사실상 무상대부 불가능

3. 그간 추진사항 검토 결과

- 무상대부 가능 여부
 - 지방재정법상 나대지 상태로 무상대부는 가능하나 공유재산에 건물 그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구시설물인 교사(校舍) 등을 신축할 수 없음.
- 현 건물신축 부지 및 향후 기숙사, 강당 예정부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매입하고 그 외 부지는 부천시에서 무상대부 가능여부

- 학교 부지의 일부 매각을 위하여 는 토지를 분할해야 하나 건물모양이 예술고인 관계로 특이하고, 화단, 주차장, 운동장등은 건물의 부속시설물이므로 도시계획법상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함

4. 향후 대책(경기도 교육청 건의)

○ 계약자 명의 변경 추진

- 소 유 자 : 대한주택공사
- 계약자 명의변경 : 당초 부천시장 → 변경 경기도 교육감
- 기 납부한 부지매입비 환수
 -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매입을 결정할 경우 '04년도 당초예산에 약 96억원을 확보하여
 - 부지매입 잔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공에 직접 납부하고, 부천시에서 기 납부한 금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천시에 지급

【도 교육청 요구사항】

부천시의 계약자명의변경 요청이 도 교육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수용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부천시로 지급하게 되는 당초 부지매입비를 학교지원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확정이 선행되어야 함

5. 부지매입비 환수금액 지원 계획

○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

- 예술관(강당) : 600석 예정, 건축연면적 1,000m²
- 기 숙 사 : 600명 수용예정, 건축연면적 7,800m²
- 총사업비 : 약 10,400백만원
- 사업기간 : 2004년도 ~
- 지원금액 : 6,240백만원(총사업비의 약 60%)
- 부지매입비 환수금액 : 7,810백만원(2003년도 4차분 포함)

(안건 2) 공유재산(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지) 매각

○ 매각재산 현황

- 소재지 :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40, 141-2
- 지 목 : 대 지
- 면 적 : 공유지분중 부천시지분 1,372.0m²(415평)
- 재산평가액 : 1,227,940천원(2003년 개별공시지가 기준)

○ 재건축사업 승인 내역

대 지 위 치			세대수	주 택 형 별	건축면적 (m ²)	연면적 (m ²)	착 공 예정일	사용검사 예 정 일
동 명	지목	면 적						
춘의동141-2 번지 외 6필	대	8,008.8m ² (2,422.6평)	268	아파트	1,769.08	34,330.11	2003. 06.	2005. 12.
※본 매각대상 토지 포함								

○ 매 각 사 유

- 매각 대상 토지는 부일·천일연립 재 건축부지내에 포함된 토지로 동 연립단지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필한 상태로 본 토지는 주택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우선 매각대상이 되어 사업주체인 부일·천일재건축조합에 매각코자 함.

○ 매수신청자 :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138-8

(부일·천일연립재건축조합 대표 이재훈)

○ 매각방법

- 수의계약 (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 제1항 1호 규정)
 - 주택법 제24조(국·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및 임대)에 의거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매각의 규정 적용
- 대금 납부방법(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4항)
 -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매각대금의 10%를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납부

(안전 3)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
- 위치 :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4-14번지 (김광익)
- 대지면적 : 522.4m²(158평)
- 사업기간 : 2003. 9월 ~ 2003. 12월
- 사업량 : 공동작업장 522.4m² (주차면수 10면)
- 총사업비 : 24억원

합계 (백만원)	부지매입비 (지상물포함)	건축물철거	폐기물처리비	포장공사 및 환경정비
2,400	2,300	30	30	40

나. 추진일정

- '03. 9월. : 투융자 심사
- '03. 10월. : 공유재산관리계획, 2003. 제3회 추경예산반영
(시비 부담금 12억)
- '03. 11월. : 부지매입완료
- '03. 12월. : 공동작업장 공사착공 및 준공

다. 재원확보 계획

- 총 소요액 : 24억원 (국고보조금 12억, 지방비 12억)
※ 중소기업청 국고보조금 :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(국비추경예산)

라. 주변현황

- 시장 주변에 부천역과 대형유통점을 비롯한 각종상가 이용인구가 1일 수십만명에 이르는 상권중심 지역이면서 광대로가 지나가는 교통중심 지역임

마. 기대효과

- 이용고객의 쇼핑편의 제공으로 시장기능 활성화 기여
- 입점 상인들의 상품 반출·입용이 및 불법 주, 정차 행위근절

바. 사후관리 방법

- 관리방법 : 자유시장번영회 위탁관리
- 위탁조건
 - 불법주정차 단속실시
 - 관리인을 고용 관리인의 봉급과 복리후생비 등은 사용료 징수금액으로 충당
 - 운영비 투명관리
 - 분기 1회 운영상황 시에 보고

(안전 4) 부천시점자도서관 건립

- 추진배경
 - 점자도서관이 입주한 구)농촌지도소 건물이 '65년도 건축되어 재건축 필요
 -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충족을 위한 『(가칭)터치미 미술관』 복합건축
 - 건립 예정부지 관할 중2동 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희망
- 사업 변경내역

구 분	당 초	변 경
위 치	원미구 심곡동 454-1	원미구 중동 1118
부지면적	596㎡ (180평)	1,000.6㎡ (303평)
소요예산	2,700백만원 (도비 2,000 시비 700백만원)	6,200백만원 (국비 600 도비 1,500 시비 4,100백만원)
시설규모	540평(지하1층, 지상4층)	1,300평(지상1층, 지상5층)
시설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각장애인 및 농아인 관련시설 ● 점자도서관 및 점서녹음서 발간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≫ 지하1층 주차장(300평) ≫ 지상1층 로비 등 ≫ 2층 (가칭)터치미 미술관 ≫ 3~4층 점자도서관 ≫ 5층 소규모 어린이도서관 ※ 지상층은 모두 200평씩

(안전 5)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

○ 추진배경

-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단체사무실 이전요구(지식산업과) 및 '65년 건축된 現 점자도서관(구 농촌지도소)이 노후로 재건축 필요
 - 지체장애자협회, 농아인협회,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
- 전세로 입주해 있는 자립작업장 및 작업활동센터 건물소유주가 2004년 상반기중 이전요구 및 다른 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중이던 아람동산(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시설)이 철수함에 따라 이의 운영장소 필요
- 수혜만 주던 복지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,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생산적복지로 전환

○ 사업 개요

- 소 재 지 :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75-3
- 부지면적 : 1,549.8m² (469평)
- 시설규모 및 소요예산
 - 규 모 : 700평 (지상4층)
 - 소요예산 : 5,176백만원(도비 1,500 / 시비 3,676백만원)
 - 부지매입비 : 2,218백만원
 - 건축비 등 : 2,958백만원
- 시설내역
 - 1 층 : 주간보호시설 및 목욕탕(200평)
 - 2 층 : 작업활동센터 및 사무실(200평)
 - 3 층 : 자립작업장(공장 ; 200평)
 - 4 층 : 자립작업장(공장 ; 100평)

(안건 6) 역곡동 27-18번지 부지 매입(도로개설)

○ 추진배경

- 대상지역은 구도심 구주택가로서 도시계획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도로가 협소하고 막다른 도로로 형성되어 있어,
- 비상 위급시 대처능력이 없는 등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역곡동27-18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연결도로 개설 및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

○ 사업 개요

- 소 재 지 :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7-18번지(주거지역)
- 부지면적 : 185.7㎡(56.7평)
- 현 용 도 : 주 택
- 시설규모 및 소요예산
 - 시설규모 : 도로 : 50㎡, 주차장 : 8면(92㎡), 조경 : 43.7㎡
 - = 소요예산 : 272,840천원
 - 부지 및 건물 매입 : 185.7×1,200,000=222,284천원
 - 시설 공사비 : 50,000천원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<p>안건1)</p> <p>○ 경기예술고에서 납부 금액을 받은 다음 다시 예술고로 지원 하는지?</p> <p>○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는?</p>	<p>○ 6,240백만원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임</p> <p>○ 부천시의 신뢰감이 떨어짐</p>

안건2)

- 법규상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 가로공원 조성도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의견은?
- 매입 당시 보상금 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여야 할 것임

안건3)

- 정확한 감정가격을 받지 않고 매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?
-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무조건적인 시비 지원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?
- 작업장과 주차장을 158평에 설치하는 것은 운영상 비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됨.
- 상가 번영회에 위탁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직접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?

- 공원조성도 타당하나, 재건축 관련 주택법 25조에 근거 우선 매각함이 타당함
- 알겠음

- 감정가격은 가 감정을 통한 것이며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-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일정한 시비의 내시가 명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좁은 지역이기는 하나 주변의 상인들에게는 이용의 편리를 줄 것으로 생각이 됨
- 운영 방법상의 장, 단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므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측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

질의요지	답변요지
<p>안전4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초 계획과 달리 녹음실과 발간실이 제외된 것인지? 관련단체의 사무실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? ○ 주민들이 점자도서관 건립을 반대하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을 추가로 반영한 것은 아닌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외 되어있는 것이 아니며 3~4층 점자도서관 시설에 포함되어 있음. 관련단체 사무실은 재할작업장에 입주시킬 예정임 ○ 주민들의 반대는 원칙적으로 없었으며, 단지 주민요구가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며 시에서도 터치미 미술관을 함께 건설하고자 함
<p>안전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역곡동 27-18번지 밑에 있는 27-50번지도 같이 매입할 필요는 없는지? 있는 이유는?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검토하여 보았는지? ○ 주차면수가 8면에 불과한데 주차장 운영방법은 어떤식으로 할 예정인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역곡동 27-50번지상의 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매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 더구나 경사도가 커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지 않으며, 특히 소유주의 매도 의사가 없음 ○ 무료 주차장으로 밖에 이용할 수가 없으며, 유료화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 음

나. 반대토론

없 음

5. 심사결과

수정의결

안건1) 원안의결, 안건2) 원안의결, 안건3) 원안의결, 안건4) 원안의결
안건5) 원안의결, 안건6)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안건1) 경기도교육청이 부지매입 조건으로 제시한 교육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안으로 심의 하여야 할 것임.

안건3) 공동작업장 설치보다는 전면적인 주차 공간의 조성이 바람직하며,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관리 함이 타당함.

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안 번호	제181호
의결 년월일	2003. 10. 15 (제107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10. 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사유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.

□ 주요골자

구분	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명	비고
당초	0.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,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 0.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 0. 상동 신시가지 주민자치센터 신축 0. 내촌공원내 내동2분회 경로당 신축 0. 상동유원지 부지내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 0. 내동 207-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0. 원미구청사 자주식 철골주차장 신축	회 계 과 회 계 과 회 계 과 오 정 구 사회복지과 도시개발 사업소 교통행정과 원 미 구 총 무 과
제1차 변경안	0. 중동 1162-8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 0. 소사본동지역 공영정류장(차고지) 설치 0. 소사본3동 충효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0. 자연학습공원 부지매입 및 주차장 건립 0. 시립식물원 사업 규모 확장 0. 상동유원지 부지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	회 계 과 교통행정과 주차사업단 농산지원 사업소 " " 도시개발 사업소
추가 안건	0. Open-Set장내 제2스튜디오 기부채납	문화예술과

제2차 변경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0. 구 심곡2동사무소 청사 매각 0.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 부지 변경 0. 부천시 시각장애인(점자도서관) 종합복지관 건립 0. 심곡본1동 성주산 공영주차장 건설(설치방식변경) 0. 심곡3동 344-9번지 지하주차장 건설 0. 오정동 609-2, 3번지 협창 공영주차장 건설 0. 시립식물원 사업비 증액 0. 지역난방 열공급 설비 공사 0. 오정동 614-6번지 쌈지공원 조성 	회 계 과 회 계 과 사회복지과 주차사업단 주차사업단 주차사업단 농산지원 사업소 청소사업소 오 정 구 지역경제과
제3차 변경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0. 시립 오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0. 사유재산(도로) 기부채납 0. 도당근린공원 시설부지 매입 0.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부지 매입 0. 덕산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	여성복지과 도 로 과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
추가 안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0. 심곡본동 정명 공영주차장 건설 0.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	주차사업단 소사구 지역경제과
제4차 변경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0. 부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 0. 부천시 점자도서관(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) 건립 변경 0. 오정동 614-6번지 가로공원 조성사업 변경 	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오정구 지역경제과
제5차 변경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0. 공유재산(재건축조합 편입도로부지) 매각 0. 한신시장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0. 사유재산(도로) 기부채납 0.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	회 계 과 지식산업과 도 로 과 시립도서관
제6차 변경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0.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 0. 공유재산(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지) 매각 0.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 0. 부천시점자도서관 건립 0. 부천시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 0. 역곡동27-18번지부지 매입 	회 계 과 회 계 과 지식산업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원미구건설과

□ 안전요지

(안전 1) 경기도예술고부지 명의변경(당초 부천시 → 경기도교육청)

- 예술고등학교 설립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부지 무상대부 요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무상대부는 가능 하지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사실상 무상대부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매수자 명의변경(당초 부천시 → 도교육청)을 추진코자 함

(안전 2) 공유재산(계남대로 확장공사잔여지)매각

- 계남대로 확장공사에 편입한 토지의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로 본 토지가 부일 · 천일연립 재건축아파트 부지내로 편입되어 재건축조합에 재매각하여야 하는 바
- 소유권 취득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는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재건축착공 지연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현재 협의되지 않고 자진철거가 안되는 건물에 대하여 계고서 발부후 행정대집행등 강제철거를 하여야 하나,
- 철거까지는 약1~2개월이 소요되므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매각에 필요한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철거와 동시 재건축 조합측에 매각 처분코자 함.

(안전 3)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

- 자유시장주변은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입점상인들이 경인국도 1개 차선을 무단 점용한 채 상품 입 · 출고 행위를 하는 등 상품 반출 · 입에 불편을 겪고 있어
- 경인국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입점상인들이 안전한 상품 입 · 출고 작업을 위하여 공동작업장 설치가 필요함

※ 설치대상부지 : 1필지 522.4㎡

(안건 4) 부천시점자도서관 건립

- 2003. 3월 제103회 임시의회에서 가결되었던 「원미구 심곡동 454-1번지 (구 농촌지도소)」 시각장애인(점자도서관)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로
- 2003. 7월 제105회 임시의회에 「원미구 중동 1051-8(꿈빛도서관 부지)」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신청 하였으나, ‘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민원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장소를 선정하라’는 사유로 반려되어 적정부지 재검토와 함께
- 시각장애인을 위한 『(가칭)터치미 미술관 및 소규모 어린이도서관』 복합건립에 대한 심의

(안건 5) 부천시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

- 장애인들의 재활근로를 위한 능력향상과 가정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복지시책의 전환 [수혜적복지 → 생산적복지] 이 필요하며
- 2003. 7월 제105회 임시의회에 「오정구 삼정동 203-6」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였으나, ‘교통이 편리하고 공해와 악취가 나지 않는 곳에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를 재검토하라’는 사유로 부결되어,
- 장애인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해가 없는 지역을 재선정하였기, 『부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』 건립에 대한 심의.

(안건 6) 역곡동27-18번지 부지 매입(도로개설)

- 원미구 역곡동 27-18번지 부지를 매입 도로를 개설하여 막다른 인접도로를 연결시켜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통행을 원활하게하며,
-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(8면)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심의.

□ 주요내용

(안건 1) 경기예술고부지 명의변경 추진(당초 부천시 → 경기도교육청)

1. 부지 계약 현황

- 소재지 : 원미구 중동 1031번지
- 부지면적 : 16,782㎡(5,076.5평)
- 계약일자 : 1999. 12. 30(5년 분할 납부)
- 계약금액 : 9,629백만원(원금 : 7,747 이자 : 1,882)
- 기납부액 : 6,231백만원(계약금외 3년차 납부금)
- 납부잔액 : 3,398백만원(2년치 시기 미도래분)

※ 경기예술고 신축 교사 현황

- 운동장 면적 : 5,321㎡(1,609.6평)
- 건축 면적 : 2,670.1㎡(788.6평) ■ 건축 연면적 : 9,331.86㎡(지하1층, 지상5층)

2. 주요 추진 사항

- '99. 3. 17 : 부천예술고 유치 기본계획수립(정책기획실, 총무과)
- '99. 7. 8 : 제71회 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결
- '99. 12. 30 : 부지 매매계약 체결(부천시 ↔ 대한주택공사)
- '00. 1. 7 : 학교설립 요청(부천시 → 경기도 교육청)
- '00. 7. 9 : 도시계획시설변경(구청 및 보건소 부지→예술고 부지)
- '02. 1. ~ '02. 9. : 예술고설립부지 무상대부 관련 협의(부천시 ↔ 경기도교육청)

- ▶ 경기도 교육청 : 예술고설립부지 무상대부 요청
- ▶ 부천시 회신 : 관계법상 영구시설물을 축소할 수 없어 사실상 무상대부 불가능

3. 그간 추진사항 검토 결과

- 무상대부 가능 여부
 - 지방재정법상 나대지 상태로 무상대부는 가능하나 공유재산에 건물 그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

구시설물인 교사(校舎) 등을 신축할 수 없음.

- 현 건물신축 부지 및 향후 기숙사, 강당 예정부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매입하고 그 외 부지는 부천시에서 무상대부 가능여부
 - 학교 부지의 일부 매각을 위하여 는 토지를 분할해야 하나 건물모양이 예술고인 관계로 특이하고, 화단, 주차장, 운동장등은 건물의 부속시설물이므로 도시계획법상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함

4. 향후 대책(경기도 교육청 건의)

- 계약자 명의 변경 추진
 - 소 유 자 : 대한주택공사
 - 계약자 명의변경 : 당초 부천시장 → 변경 경기도 교육감
 - 기 납부한 부지매입비 환수
 -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매입을 결정할 경우 '04년도 당초 예산에 약 96억원을 확보하여
 - 부지매입 잔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공에 직접 납부하고, 부천시에서 기 납부한 금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천시에 지급

【도 교육청 요구사항】

부천시의 계약자명의변경 요청이 도 교육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수용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부천시로 지급하게 되는 당초 부지매입비를 학교지원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확정이 선행되어야 함

5. 부지매입비 환수금액 지원 계획

-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
 - 예술관(강당) : 600석 예정, 건축연면적 1,000m²
 - 기 숙 사 : 600명 수용예정, 건축연면적 7,800m²
 - 총사업비 : 약 10,400백만원
 - 사업기간 : 2004년도 ~
 - 지원금액 : 6,240백만원(총사업비의 약 60%)
 - 부지매입비 환수금액 : 7,810백만원(2003년도 4차분 포함)

(안건 2) 공유재산(계남대로확장공사 잔여지) 매각

○ 매 각 재 산 현 황

- 소 재 지 :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40, 141-2
- 지 목 : 대
- 면 적 : 공유지분중 부천시지분 1,372.0m²(415평)
- 재산평가액 : 1,227,940천원(2003년 개별공시지가기준)

○ 재건축사업 승인 내역

대 지 위 치			세대수	주 택 형 별	건축면적 (m ²)	연면적 (m ²)	착 공 예정일	사용검사 예 정 일
동 명	지목	면 적						
춘의동141-2 번지 외 6필	대	8,008.8m ² (2,422.6평)	268	아파트	1,769.08	34,330.11	2003. 06.	2005. 12.
※본 매각대상 토지 포함								

○ 매 각 사 유

- 매각 대상 토지는 부일 · 천일연립 재건축부지내에 포함된 토지로 동 연립단지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필한 상태로 본 토지는 주택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우선 매각대상이 되어 사업주체인 부일 · 천일재건축조합에 매각코자 함.

○ 매수신청자 :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138-8

부일 · 천일연립재건축조합 대표 이 재 훈

○ 매각방법

- 수의계약 (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 제1항 1호 규정)
 - 주택법 제24조(국·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및 임대)에 의거
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주택조합이 건설하는
주택에 대하여 우선 매각의 규정 적용
- 대금 납부방법(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4항)
 -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매각대금의 10%를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체결후 60일 이내 납부.

(안건 3)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

가. 사업내용

- 사업명 :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
- 위치 :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4-14번지 (김광익)
- 대지면적 : 522.4m²(158평)
- 사업기간 : 2003. 9월 ~ 2003. 12월
- 사업량 : 공동작업장 522.4m² (주차면수 10면)
- 총사업비 : 24억원

합계 (백만원)	부지매입비 (지상물포함)	건축물 철거	폐기물처리비	포장공사 및 환경정비
2,400	2,300	30	30	40

나. 추진일정

- '03. 9월. : 투융자 심사
- '03. 10월. : 공유재산관리계획, 2003. 제3회 추경예산반영
(시비 부담금 12억)
- '03. 11월. : 부지매입완료
- '03. 12월. : 공동작업장 공사착공 및 준공

다. 재원확보 계획

- 총 소요액 : 24억원 (국고보조금 12억, 지방비 12억)
※ 중소기업청 국고보조금 :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(국비추경예산)

라. 주변현황

- 시장 주변에 부천역과 대형유통점을 비롯한 각종상가 이용인구가 1일 수십만명에 이르는 상권중심 지역이면서 광대로가 지나가는 교통중심지역임

마. 기대효과

- 이용고객의 쇼핑편의 제공으로 시장기능 활성화 기여
- 입점 상인들의 상품 반출·입 용이

- 불법 주·정차 행위근절

바. 사후관리방법

- 관리방법 : 자유시장번영회 위탁관리
- 위탁조건
 - 불법주정차 단속실시
 - 관리인을 고용 관리인의 봉급과 복리후생비 등은 사용료 징수금액으로 충당
 - 운영비 투명관리
 - 분기 1회 운영상황 시에 보고

(안건 4) 부천시점자도서관 건립

- 추진배경
 - 점자도서관이 입주한 구)농촌지도소 건물이 '65년도 건축되어 재건축 필요
 -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충족을 위한 『(가칭)터치미 미술관』 복합건축
 - 건립 예정부지 관할 중2동 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희망
- 사업 변경내역

구 분	당 초	변 경
위 치	원미구 심곡동 454-1	원미구 중동 1118
부지면적	596㎡ (180평)	1,000.6㎡ (303평)
소요예산	2,700백만원 (도비 2,000 시비 700백만원)	6,200백만원 (국비 600 도비 1,500 시비 4,100백만원)
시설규모	540평(지하1층, 지상4층)	1,300평(지상1층, 지상5층)
시설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각장애인 및 농아인 관련시설 • 점자도서관 및 점서녹음서 발간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» 지하1층 주차장(300평) » 지상1층 로비 등 » 2층 (가칭)터치미 미술관 » 3~4층 점자도서관 » 5층 소규모 어린이도서관 ※ 지상층은 모두 200평씩

(안건 5) 부천시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

○ 추진배경

-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단체사무실 이전요구(지식산업과) 및 '65년 건축된 現 점자도서관(구 농촌지도소)이 노후로 재건축 필요 ☞ 지체장애자협회, 농아인협회,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
- 전세로 입주해 있는 자립작업장 및 작업활동센터 건물소유주가 2004년 상반기중 이전요구 및 다른 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중이던 아람동산(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시설)이 철수함에 따라 이의 운영장소 필요
- 수혜만 주던 복지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,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생산적복지로 전환

○ 사업 개요

- 소 재 지 : 원미구 도당동 75-3
- 부지면적 : 1,549.8m² (469평)
- 시설규모 및 소요예산
 - 규 모 : 700평 (지상4층)
 - 소요예산 : 5,176백만원(도비 1,500 / 시비 3,676백만원)
 - 부지매입비 : 2,218백만원
 - 건축비 등 : 2,958백만원
- 시설내역
 - 1층 : 주간보호시설 및 목욕탕(200평)
 - 2층 : 작업활동센터 및 사무실(200평)
 - 3층 : 자립작업장(공장 ; 200평)
 - 4층 : 자립작업장(공장 ; 100평)

(안건 6) 역곡동27-18번지 부지 매입(도로개설)

○ 추진배경

- 대상지역은 구도심 구주택가로서 도시계획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도로가 협소하고 막다른 도로로 형성되어 있어,
- 비상 위급시 대처능력이 없는 등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역곡동

27-18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연결도로개설 및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

○ 사업 개요

- 소 재 지 : 원미구 역곡동 27-18번지(주거지역)
- 부지면적 : 185.7m²(56.7평)
- 현 용 도 : 주 택
- 시설규모 및 소요예산
 - 시설규모 : 도로 : 50m², 주차장 : 8면(92m²), 조경 : 43.7m²
 - 소요예산 : 272,840천원
 - 부지 및 건물 매입 : 185.7×1,200,000=222,284천원
 - 시설 공사비 : 50,000천원

2003년(6차) 취득대상재산목록(7-2)

(단위 : m², 백만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추정 가액	시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	비고
	구분	소 재 지	수 량					
	토지 건물 기타	3 건 1 건	2,257.9 4,297.5	7,849 6,200				
1	토지 건물 기타	소사구 심곡본동 534-14	522.4	2,400	2003	자유시장공동작업장 설치	김광익	
2	토지 건물 기타	원미구 역곡동27-18	185.7	273	2003	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	조덕환	
3	토지 건물 기타	원미구 도당동 75-3	1,549.8	5,176	2003	장애인재활자립장건립	주)한일바이산업	
4	토지 건물 기타	원미구 중동 1118	4,297.5	6,200	2003	부천시점자도서관 건립	신 측	
5	토지 건물 기타	이			하	여	백	
6	토지 건물 기타							
7	토지 건물 기타							

경기예술고부지명의변경

□ 목 적

- 경기예술고등학교 설립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부지 무상대부 요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무상대부는 가능하지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사실상 무상대부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매수자 명의변경(당초 부천시 → 도교육청)을 추진코자 함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(시 공유재산심의회)

□ 주요내용

1. 부지 계약 현황

- 소재지 : 원미구 중동 1031번지
- 부지면적 : 16,782㎡(5,076.5평)
- 계약일자 : 1999. 12. 30(5년 분할 납부)
- 계약금액 : 9,629백만원(원금 : 7,747 이자 : 1,882)
- 기납부액 : 6,231백만원(계약금외 3년차 납부금)
- 납부잔액 : 3,398백만원(2년치 시기 미도래분)

※ 경기예술고 신축 교사 현황

- | |
|---|
| ■ 운동장 면적 : 5,321㎡(1,609.6평) |
| ■ 건축 면적 : 2,670.1㎡(788.6평) ■ 건축 연면적 : 9,331.86㎡(지하1층, 지상5층) |

2. 주요 추진 사항

- '99. 3. 17 : 부천예술고 유치 기본계획수립(정책기획실, 총무과)
- '99. 6. 23 : 공유재산 취득 시정조정위원회심의 의결(구청 및 보건소)

부지 매입) - 회계과

- '99. 7. 8 : 제71회 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결
- '99. 12. 30 : 부지 매매계약 체결(부천시 ↔ 대한주택공사)
- '00. 1. 7 : 학교설립 요청(부천시 → 경기도 교육청)
- '00. 7. 9 : 도시계획시설변경(구청 및 보건소 부지→예술고 부지)
- '00. 7. ~ '02. 12. : 부지매입대금 중도금 지급(1년차~3년차 6,231백만원)
- '02. 1. ~ '02. 9. : 예술고설립부지 무상대부 관련 협의(부천시 ↔ 경기도교육청)

▶ 경기도 교육청 : 예술고설립부지 무상대부 요청

▶ 부천시 혁신 : 관계법상 영구시설물을 축소할 수 없어 사실상 무상대부 불가능

3. 그간 추진사항 검토 결과

○ 무상대부 가능 여부

- 예술고 유치계획 수립 추진시 부천시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교육청에 무상대부할 계획이었으나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공유재산에 건물 그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구시설물인 교사(校舍) 등을 신축할 수 없음.

○ 현 건물신축 부지 및 향후 기숙사, 강당 예정부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매입하고 그 외 부지는 부천시에서 무상대부 가능여부

- 학교 부지의 일부 매각을 위하여는 토지를 분할해야 하나 건물 모양이 예술고인 관계로 특이하고, 화단, 주차장, 운동장 등은 건물의 부속시설물이므로 도시계획법상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함

4. 향후 대책(경기도 교육청 건의)

○ 계약자 명의 변경 추진

- 소유자 : 대한주택공사
- 계약자 명의변경 : 당초 부천시장 → 변경 경기도 교육감
- 기 납부한 부지매입비 환수
 -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매입을 결정할 경우 '04년도 당초 예산에 약 96억원을 확보하여

- 부지매입 잔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공에 직접 납부하고, 부천시에서 기 납부한 금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천시에 지급

○ 그간 추진사항

- '03. 8. 8 : 명의변경 가능여부 문의결과 가능하다는 답변회신 (대한주택공사)
- '03. 9. 4 : 명의변경 경기도교육청 건의

【도 교육청 요구사항】

부천시의 계약자명의변경 요청이 도 교육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수용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부천시로 지급하게 되는 당초 부지매입비를 학교지원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확정이 선행되어야 함

5. 부지매입비 환수금액 지원 계획

○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

- 예술관(강당) : 600석 예정, 건축연면적 1,000㎡
- 기숙사 : 600명 수용예정, 건축연면적 7,800㎡
- 총사업비 : 약 10,400백만원
- 사업기간 : 2004년도 ~
- 지원금액 : 6,240백만원(총사업비의 약 60%)
- 부지매입비 환수금액 : 7,810백만원(2003년도 4차분 포함)

○ 추진 일정

- '03. 9월중 : 시정조정위원회 심의
- '03. 10월중 :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(시의회 심의)
- '03. 11월중 : 부지매입비 지원방침 경기도교육청 제출

□ 종합 검토 의견

- 당초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과 부천시장 간 체결된 부지매입 계약을 경기도교육감으로 명의 변경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매입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매입을 결정할 경우 '04년도 당초예산에 약96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잔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공에 직접 납부하고 부천시에서 기납부한 금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천시에 지급하며
- 명의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 교육청에서 요구한

부지매입금 환수금의 학교예산 지원계획과 관련 하여는

- 우리시에서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부천시교육경비 지원방침 등에 의거 사업비(교육환경개선사업)의 경우 관내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%를 지원(총무과에서)해 오고 있으므로
- 경기예술고 부지매입 환수금을 예술관(기숙사)건립비용으로 지원(학교측의 신청을 받아)함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심의를 거친 후
-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경기예술고부지 무상대부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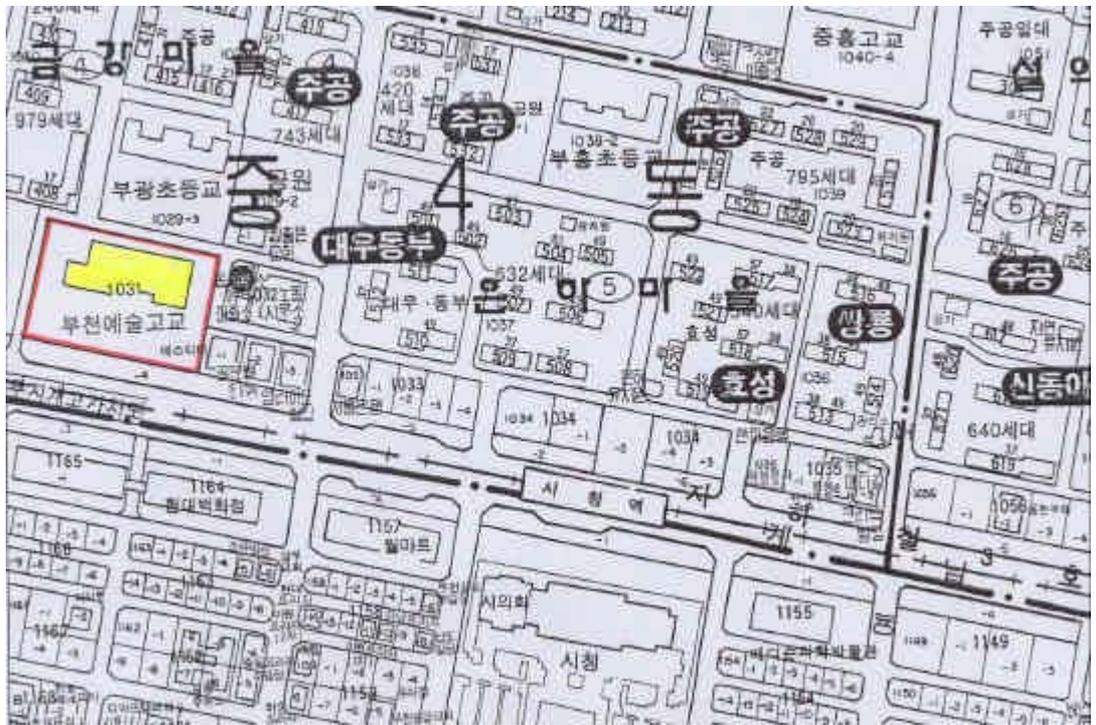
현 장 사 진

□ 경기종합예술고 부지 현황

전
경
사
진



위
치
도



공유재산매각(계남대로확장공사잔여지)

□ 목 적

- 공유재산 매각 심의대상 토지는 계남대로 확장공사에 편입한 토지의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로 본 토지가 부일 · 천일연립 재건축아파트 부지내로 편입되어 재건축조합에 재매각하여야 하는 바
- 소유권 취득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는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재건축착공 지연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현재 협의되지 않고 자진철거가 안되는 건물에 대하여 계고서 발부 후 행정대집행등 강제철거를 하여야 하나,
- 철거까지는 약1~2개월이 소요되므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매각에 필요한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한후 철거와 동시 재건축조합측에 매각 처분코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(잡종재산의 매각)
-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(시 공유재산심의회)

□ 주요내용

- 매 각 재 산 현 황
 - 소 재 지 :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40, 141-2
 - 지 목 : 대
 - 면 적 : 공유지분중 부천시지분 1,372.0m²(415평)
 - 재산평가액 : 1,227,940천원(2003년 개별공시지가기준)

○ 재건축사업 승인 내역

대 지 위 치			세대수	주 택 형 별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착 공 예정일	사용검사 예 정 일
동 명	지목	면 적						
춘의동141-2 번지 외 6필	대	8,008.8㎡ (2,422.6평)	268	아파트	1,769.08	34,330.11	2003. 06.	2005. 12.
※본 매각대상 토지 포함								

○ 매 각 사 유

- 매각 대상 토지는 부일·천일연립 재건축부지내에 포함된 토지로 동 연립단지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필한 상태로 본 토지는 주택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우선 매각대상이 되어 사업주체인 부일·천일재건축조합에 매각코자 함.

○ 매수신청자 :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138-8

부일·천일연립재건축조합 대표 이 재 훈

○ 매각방법

- 수의계약 (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 제1항 1호 규정)
 - 주택법 제24조(국·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및 임대)에 의거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매각의 규정 적용
- 가격산정
 -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감정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.
- 대금 납부방법(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4항)
 -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매각대금의 10%를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 체결후 60일 이내 납부.

□ 검토 및 처리의견(회계과)

- 본 토지는 재건축을 위하여 주택건설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부지내 포함된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수익계약으로 매각대상이며
-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사전절차 (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)를 선행한 후 현 건물 철거와 동시 재건축 조합측과 매매계약 체결코자 함

현장사진 및 위치도

소재지 : 춘의동 140, 141-2번지, 공유지분 대1,372.0㎡

사
진



위
치
도



자유시장공동작업장설치

□ 목 적

- 자유시장이 개설된 시기에는 자동차 보급률과 주택보급율이 높지 않아서 주차장 및 공동창고(작업장)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으나, 현재의 시장 주변 상황은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,
- 대부분의 입점상인들이 경인국도 1개 차선을 무단 점용한채 상품입·출고 행위를 하고 있어 불법 주·정차 행위로 자주 단속되는 등 상품 반출·입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인국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입점상인들이 안전한 상품 입·출고 작업을 위하여 공동작업장 설치가 필요함

※ 설치대상부지 : 1필지 522.4m²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(시 공유재산심의회)
-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(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특례)
-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2조 (예산의 지원)

□ 주요내용

가. 사업내용

- 사업명 :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
- 위치 :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4-14번지 (김광익)
- 대지면적 : 522.4m²(158평)
- 사업기간 : 2003. 9월 ~ 2003. 12월
- 사업량 : 공동작업장 522.4m² (주차면수 10면)

○ 총사업비 : 24억원

합 계 (백만원)	부지매입비 (지상물포함)	건축물 철거	폐기물처리비	포장공사 및 환경정비
2,400	2,300	30	30	40

나, 추진일정

- '03. 9월. 투융자 심사
- '03. 9월. 시정조정위원회, 공유재산관리계획
2003. 제3회 추경예산반영 (시비 부담금 12억)
- '03. 11월. 부지매입완료
- '03. 12월. 공동작업장 공사착공 및 준공

다, 재원확보 계획

- 총 소요액 : 24억원 (국고보조금 12억, 지방비 12억)
- ※ 중소기업청 국고보조금 :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(국비추경예산)

라, 주변현황

- 시장 주변에 부천역과 대형유통점을 비롯한 각종상가 이용인구가 1일 수십만명에 이르는 상권중심 지역이면서 광대로가 지나가는 교통중심지역임

마, 기대효과

- 이용고객의 쇼핑편의 제공으로 시장기능 활성화 기여
- 입점 상인들의 상품 반 출·입 용이
- 불법 주·정차 행위근절

바, 사후관리방법

- 관리방법 : 자유시장번영회 위탁관리
- 위탁조건
 - 불법주정차 단속실시
 - 관리인을 고용 관리인의 봉급과 복리후생비 등은 사용료 징수금액으로 충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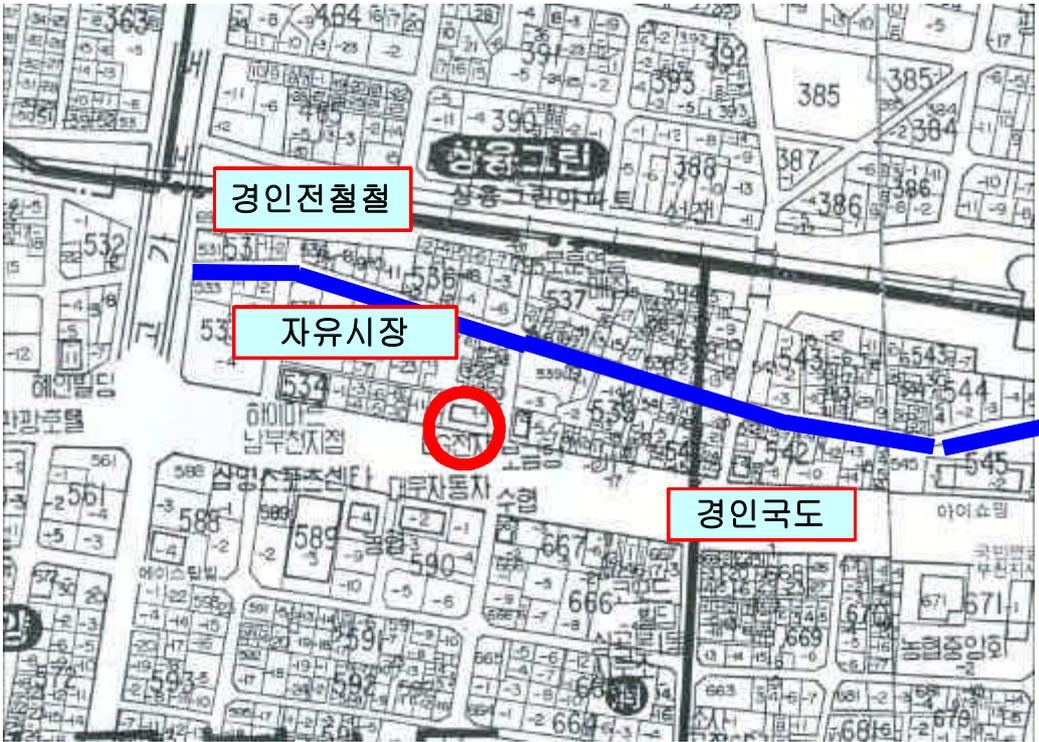
- 운영비 투명관리
- 분기 1회 운영상황 시에 보고

□ 검토 및 처리의견(지식산업과)

- 지시자유시장 입점 상인들이 불법 주·정차 집중 단속구역인 경인국도에서 1개 차선을 무단 점용하여 상품 입·출고 행위를 하고 있어 단속 경찰과의 마찰이 빈번할 뿐 아니라 경인로 상습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입점상인들의 안전한 상품 입·출고가 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가 시급함

현 황 도

□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부지

전 경 사 진	 <p>A photograph of a street scene. In the background, there is a multi-story building with various signs. A red box highlights a specific building with the label "대상부지건물" (Target Site Building). The street is paved and has some traffic, including a white van and a dark car. There are orange traffic cones in the foreground.</p>
위 치 도	 <p>A detailed map of the area. A blue line represents a road or path. A red circle highlights a specific location, which is the target site. Labels on the map include "경인전철철" (Kyngin Subway), "자유시장" (Jayeusi Market), and "경인국도" (Kyngin National Road). The map shows a grid of streets and building footprints.</p>

부천시점자도서관(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)건립변경계획

□ 목 적

- 2003. 3월 제103회 임시의회에서 가결되었던 원미구 심곡동 454-1번지 (구 농촌지도소)」 시각장애인(점자도서관)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로
- 2003. 7월 제105회 임시의회에 「원미구 중동 1051-8(꿈빛도서관 부지)」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신청 하였으나, ‘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민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장소를 선정하라’는 사유로 반려되어 적정부지 재검토와 함께
- 시장님의 지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『(가칭)터치미 미술관 및 소규모 어린이도서관』 복합건립에 대한 심의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(시 공유재산심의회)

□ 주요내용

- 추진배경
 - 점자도서관이 입주한 구)농촌지도소 건물이 '65년도 건축되어 재건축 필요
 -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충족을 위한 『(가칭)터치미미술관』 복합건축
 - 건립 예정부지 관할 중2동 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희망

○ 사업 변경내역

구분	당 초	변 경
위 치	원미구 심곡동 454-1	원미구 중동 1118
부지면적	596m ² (180평)	1,000.6m ² (303평)
소요예산	2,700백만원 (도비 2,000 시비 700백만원)	6,200백만원 (국비 600 도비 1,500 시비 4,100백만원)
시설규모	540평(지하1층, 지상4층)	1,300평(지상1층, 지상5층)
시설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각장애인 및 농아인 관련시설 • 점자도서관 및 점서녹음서 발간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하1층 주차장(300평) ▶ 지상1층 로비 등 ▶ 2층 (가칭)터치미 미술관 ▶ 3~4층 점자도서관 ▶ 5층 소규모 어린이도서관 ※ 지상층은 모두 200평씩

□ 검토 및 처리의견(사회복지과)

- 현 점자도서관이 건축된지 38년되어 낡고 노후되고, 보유장서 및 장비와 이용자의 증가로 좀 더 넓고 안정된 건물이 필요하며,
- 어려서부터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게 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,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과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하는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함은 물론,
- 장애인들 이용에도 불편이 없고, 지역주민들이 점자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복합건축을 강력히 희망함으로 사업추진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.

현 황 도

□ 부천시점자도서관 부지

전
경
사
진



위
치
도



부천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건립

□ 목 적

- 장애인들의 재활근로를 위한 능력향상과 가정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복지시책의 전환 [수혜적복지 → 생산적복지] 이 필요하며
- 2003. 7월 제105회 임시의회에 「오정구 삼정동 203-6」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였으나, ‘교통이 편리하고 공해와 악취가 나지 않는 곳에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를 재검토하라’는 사유로 부결되어,
- 장애인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해가 없는 지역을 재선정하였기, 『부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』 건립에 대한 심의.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(시 공유재산심의회)

□ 주요내용

○ 추진배경

-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단체사무실 이전요구(지식산업과) 및 ‘65년 건축된 現 점자도서관(구 농촌지도소)이 노후로 재건축 필요
↳ 지체장애자협회, 농아인협회,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
- 전세로 입주해 있는 자립작업장 및 작업활동센터 건물소유주가 2004년 상반기중 이전요구 및 다른 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중이던 아람동산(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시설)이 철수함에 따라 이의 운영장소 필요
- 수혜만 주던 복지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,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생산적복지로 전환

○ 사업 개요

- 소 재 지 : 원미구 도당동 75-3
- 부지면적 : 1,549.8㎡ (469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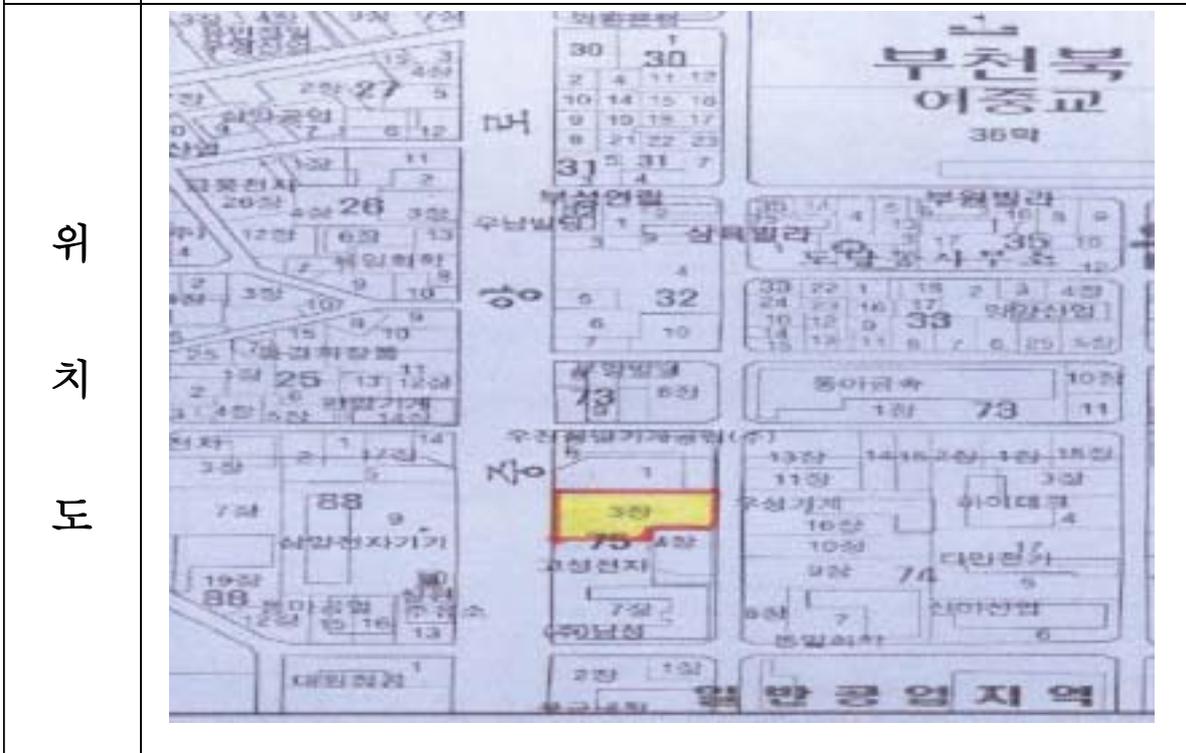
- 시설규모 및 소요예산
 - 규 모 : 700평 (지상4층)
 - 소요예산 : 5,176백만원(도비 1,500 / 시비 3,676백만원)
 - 부지매입비 : 2,218백만원
 - 건축비 등 : 2,958백만원
- 시설내역
 - 1층 : 주간보호시설 및 목욕탕(200평)
 - 2층 : 작업활동센터 및 사무실(200평)
 - 3층 : 자립작업장(공장 ; 200평)
 - 4층 : 자립작업장(공장 ; 100평)

□ 검토 및 처리의견(사회복지과)

- 동 부지는 도당산 밑에 위치하여 공해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, 중앙로변에 위치하여 장애인들의 시설이용이 편리할 뿐아니라, 일반공업지역으로 공장유치에도 적합함.
-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(쓰레기봉투 생산공장 등)을 건립하여, 가정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,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경제·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함.
- 지체장애인협회 등 단체사무실 및 관련시설의 수용을 위하여 건립이 시급함.

현 장 사 진

□ 부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계획



역곡동27-18번지부지매입(도로개설)

□ 목 적

- 원미구 역곡동 27-18번지 부지를 매입 도로를 개설하여 막다른 인접 도로를 연결시켜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통행을 원활하게하며,
-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(8면)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심의.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(시 공유재산심의회)

□ 주요내용

- 추진배경
 - 대상지역은 구도심 구주택가로서 도시계획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도로가 협소하고 막다른 도로로 형성되어 있어,
 - 비상 위급 시 대처능력이 없는 등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역곡동27-18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연결도로 개설 및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
- 사업 개요
 - 소 재 지 : 원미구 역곡동 27-18번지(주거지역)
 - * 소유주 : 원미구 역곡동28-17 조덕환
 - 부지면적 : 185.7m²(56.7평)
 - 현 용 도 : 주 택
 - 시설규모 및 소요예산
 - 시설규모 : 도로 : 50m², 주차장 : 8면(92m²), 조경 : 43.7m²

- 소요예산 : 272,840천원
 - 부지 및 건물 매입 : $185.7 \times 1,200,000 = 222,284$ 천원
 - 시설 공사비 : 50,000천원

□ 검토 및 처리의견(원미구 건설과)

-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막다른 인접도로를 연결시켜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통행을 원활하게 해야함.
- 도시계획 시설이 열악한 이 지역에 도로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시켜야 함.

현 장 사 진

□ 역곡동 27-18번지 연결도로개설 부지

전
경
사
진



위
치
도

